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24 선고 2019가단366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3,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D 소재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과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피고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촬영을 받고, 피고가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MRI 진단비를 피고에 납부한 후, 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실손 의료비로 원고에게 청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MRI 진단비 상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75호)에서 인정하는 MRI 세부산정기준에 의하면, MRI 급여 기준을 넓게 확장하고 있는데, ① 척추질환으로 척추골절 등, ② 관절질환으로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을 전부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MRI 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인정 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MRI 진단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전부 청구한 것이며, 이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의 청구에 따라 MRI 진단비를 피고에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고액의 MRI 진단비를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및 수납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MRI 검사비로 지급한 금액에서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금의 차액 상당을 부담이득 하였고, 그 금액은 2,743,146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담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금 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담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각 MRI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MRI 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중 퇴행성 및 만성 손상 이외의 것에 대한 MRI 진단검사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추가진단검사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험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MRI 검사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단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위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진단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의 진료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위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보험계약상 특별약관의 해석 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피고의 진료행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대위권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등으로 양자 사이에 법률상·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에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한 경우는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집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하나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은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합계가 다액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가 대부분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피보험자들이 자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위 피보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원고로부터 환수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터이니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인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별지